

# 원자로운영및안전관리위원회규정

제정 : 2008년 7월 8일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 원자로 운영 및 안전관리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,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원자로시설을 이용한 새로운 실험의 검토 및 승인
  2. 원자로의 안전운전과 관련된 원자로 시설의 개조 및 추가 시설에 대한 검토
  3. 원자로운영기술지침의 확립 및 개정에 대한 검토, 승인
  4. 원자로운영기술지침에 위반한 사항의 검토 및 승인
  5. 원자로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주는 비정상 운전에 대한 검토 및 분석
  6. 원자로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감독자 및 운영기사의 임면을 제정할 수 있다.
1. 원자로조종감독자
  2. 방사선취급감독자
  3.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
  4. 원자로조종사
  5.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
- ③ 위원회는 교내, 국내 연구기관, 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실험을 종합 조정하며, 원자로시설의 안전 운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한다.

제3조(조직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(국제)이 되며, 간사는 원자로센터장이 된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5인의 당연직 위원을 둔다.

1. 부총장(국제)
  2. 테크노공학대학장
  3. 원자력공학과장
  4. 방사선취급감독자
  5. 원자로센터장
- ④ 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자로센터장이 추천하고 부총장(국제)이 임명한 2인 이상의 임명직 위원을 둔다.

제4조(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운영)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4월 중에 1회 개최한다.

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

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, 보관하여야 한다.

제6조(주관부서)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는 원자로센터에서 담당한다.

제7조(보칙)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## 부 칙

본 규정은 2008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.